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8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65474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희
원고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근후
피 고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20 케이티에프타워
대표이사 남중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변 론 종 결 2005. 5. 31.
판 결 선 고 2005.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5.부터 2005.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개인휴대통신 역부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인터넷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의 2000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은 3조 2,248억 원(매출액 점유율 27.1%), 2002. 1. 당시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961만 명(가입자 점유율 32.8%) 정도였다.

(2) 원고들은 2000년 내지 2002년경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서비스 이용약관

(1)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갑 2호증)은 '피고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금,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시비

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조 제1항)', '피고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피고는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위 약관은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신청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서는 부가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로 ① 방문신청의 경우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② 전화신청의 경우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1) 피고는 1998. 5.부터 가입자들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 그림, 소리, 화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2001. 1. 8.부터 매직엔(Magic®)이라는 명칭을 붙임], 1999. 5. 20.경 월정액의 이용료로 매월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정보량(패킷)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상품(이하 '월정액 매직엔'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2) 2001. 10. 당시 위 월정액 매직엔에는 ① 월 2,700원에 월 60분(평상 20분, 일반 10분, 심야 30분)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엔60', ② 월 4,500원에 월 120분(평상 50분, 일반 20분, 심야 50분)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엔120', ③ 월

8,500원에 월 240분(평상 100분, 일반 40분, 심야 100분)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엔240', ④ 월 2,700원에 월 1,000패킷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엔1000', ⑤ 월 4,500원에 월 2,000패킷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엔2000', ⑥ 월 8,500원에 월 4,500패킷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매직엔4500' 등의 상품이 있었다.

라.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관리

(1) 피고는 2001년경 자신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모집, 요금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약 1,500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었는데, 대리점들에게 약정된 가입청약 수수료, 수납 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외에도, 프리카드를 지급하는 등 대리점 운영비용을 지원하거나 영업 정책에 따르지 않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각 지역별 영업센터를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새로운 요금상품 및 영업 정책을 수시로 통보하고, 대리점 업주들에게 연 1회 유통아카데미라는 교육을 시키고, 매월 대리점 업주들을 모집하여 영업회의를 하였으며, 대리점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직접 업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월정액 매직엔 캠페인

(1) 피고는 2001. 7.경부터 월정액 매직엔 가입유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대리점이 매직엔60/1000 가입을 유치할 경우 1,100원, 매직엔120/2000 가입을 유치할 경우 5,500원, 매직엔240/4500 가입을 유치할 경우 8,800원의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고(가입자가 3개월 이상 서비스 유지 시), 유치 실적에 따라 매직엔60/1000 가입실적이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100원,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경우 2,200원,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3,300원, 200대 이상인 경우 4,400원, 매직엔120/240/2000/4500 가입실적

이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2,200원,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경우 3,300원,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4,500원, 200대 이상인 경우 6,600원의 발령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월정액 매직엔의 가입유치를 독려하였다.

(2) 위와 같은 캠페인 결과 피고의 2001년도 매직엔60/120/240의 모집건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게 되었다.

구분	2001. 1.~3.	2001. 4.~6.	2001. 7.~9.	2001. 10.~12.	연간 합계
매직엔60	269,024	120,517	46,448	242,101	678,090
매직엔120	43,639	144,374	37,952	512,241	738,206
매직엔240	550	1,500	2,371	16,254	20,675
합계	313,213	266,391	86,771	770,596	1,436,971

바.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

(1) 그런데, 피고의 대리점인 동원텔레콤을 운영하던 김혜숙은 월정액 매직엔 가입유치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강남영업센터 사무접기 사용을 지원받고, 2001. 10. 정부터 2001.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동원텔레콤 가입고객 및 피고 직원 민원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대리점(21세기정보, 형우텔레콤, 우림정보, 셀라월드, 서울통신 등) 가입고객 신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의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나타나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그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전산처리하였고, 그 밖의 다른 대리점들에서도 이와 같은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이 많이 이루어졌다.

(2) 통신위원회는 피고의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2002. 1. 14.부터 피고의 월정액 매직엔 가입자 770,596명(2001. 10.부터 2001. 12.까지)에 대하여 가입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매직엔 이용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

용하고 있는 이용자 35,348명에게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고, 매직엔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34,630명에게 월정액 매직엔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3) 그리고 위 조사결과, 같은 기간 수도권 8개 대리점에서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시킨 81,293명의 이용자들 가운데 월정액 매직엔을 2-3개월 무료라고 안내하여 가입시킨 후 요금을 부과한 경우가 4,224건,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3개월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행위가 16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통신위원회의 조사

(1) 피고는 통신위원회 조사를 통하여 2002. 2. 이전에도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 등으로 4,100만 원,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2회 부과받은 바 있었는데, 통신위원회는 위 2002. 1. 14.경의 조사 이후 2002. 2. 22. 피고에게 월정액 매직엔 부당가입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하며, 2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따라 2002. 4.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2002. 4. 13.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2) 그 후 통신위원회는 2003. 6. 2.부터 2003. 6. 14.까지 피고의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조사 후 2003. 7. 2. 피고에게 의무사용기간 설정, 무단가입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03. 8. 11.부터 2003. 8. 26.까지 조사 후 2003. 9. 1. 유료부가서비스 및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설정, 무단가입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였다.

(3) 통신위원회는 2004. 11. 1.부터 2004. 11. 30.까지 제기된 피고의 민원 분석 결과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금제, 유료부가서비스에 무단가입시키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2005. 3. 21. 다시 피고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아. 무단가입 민원에 대한 피고의 조치

(1) 피고는 월정액 매직엔에 무단 가입되었다는 이용자들의 항의에 대하여, 2001. 10. 초경까지는 대리점을 통하여 요금을 환불받도록 안내하다가, 나중에는 항의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이용신청이 있었는지,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비스 등록을 취소하고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조정하여 주고, 30분 무료통화(표준요금 10초당 18원 기준으로 3,240원 상당)를 제공하였다.

(2) 한편,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이 문제될 것을 염려한 피고의 대리점들은 무단가입시킨 이용자들 모르게 다시 월정액 매직엔 등록을 해지하기도 하였고, 이용자들 또는 피고의 대리점들에 의하여 상당수가 해지되어 2002. 8.경의 피고의 월정액 매직엔 이용자 총수는 8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3) 피고는 2001. 12. 5.경 영업부서 및 각 대리점에 부가서비스 임의등록 등의 부당 영업행위로 고객 불만을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2002. 1. 15.부터 대리점에 대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거나,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를 임의로 등록, 의무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영업행위 적발시 1차적으로 강제수납, 수수료 환수 등의 조치를,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금 등 지원 제외,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각 대리점과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영업 업무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따라 2002. 5.경부터 ① 매직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단말기 이용고객에 대하여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② 월정액 매직엔 가입시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단문메세지를 발송하며, ③ 신규가입·변경신청서, 이용료 청구서에 부가서비스 등록 내역 등이 잘 보이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④ 대리점에 대한 월정액 매직엔 가입유치 실적에 따른 볼륨수수료 제도를 폐지하였다.

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 매직엔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신성철은 2001. 9.부터 2001. 12.까지 총 15,313원이 월정액 매직엔 요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 및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2002. 1. 4. 위 요금 및 이자 합계 15,593원을 환불받았다.

(2) 그리고 신성철은 2002. 1. 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피고의 보상금(1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2. 4. 22. 피고에 대하여 신성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차. 형사처벌

위 신성철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02. 7.경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2002. 11. 15.경 2002고약43771호로 피고의 개인정보 무단이용죄(정보통신법 제66조,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전기통신역무의 무단제공죄(전기통신사업

법 제77조, 제70조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위 약식명령이 2002. 12. 20.경 확정되었다.

카. 관련법령

(1) 정보통신법 제24조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i)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iii)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iv)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13, 15, 17, 18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혜숙, 민원점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이용약관과 달리 위법하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가사 피고의 대리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리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또는 피고는 원고들과의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직접 또는 대리점들을 이행보조자로 이용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무단가입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매직엔 이용실적이 적은 가입자들에게는 의사에 의한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환불하여 주었고, 원고 김미경, 김용범, 김평기, 한기수는 피고로부터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환불받은 바도 없으므로, 매직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대리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약관과 달리 위법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바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점들은 피고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대리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대리점들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라 한 수도 없다.

(3) 위자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환불하고, 30분 무료통화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는 이미 회복되었고, 재산적 손해가 회복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손해는 회복되므로 따로 원고들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63, 을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2. 월정액 매직엔 가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0. 8.경부터 2002. 6.경까지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에 가입되었다가 해지 처리되고, 요금 조정일란 기재 날짜에 이동전화요금 차감, 이동전화요금을 일부 현금 납부한 것으로 처리, 현금으로 송금, 프리카드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매직엔 요금을 환불받은 사실, 원고 김미경의 2001. 11.부터 2002. 4.까지 매직엔(무선데이터) 이용내역은 월 2분씩 2회에 불과하고, 원고 김미경이 2002. 4. 피고로부터 30분 무료통화를 제공받은 사실, 원고 김용범은 2002. 1.부터 2002. 6.까지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납부하면서도 매직엔(무선데이터) 무료이용분수가 전혀 없었던 사실, 원고 김평기는 2002. 7. 16. 매직엔120 서비스를 취소 처리한 후 2002. 8. 16. 피고로부터 16,400원을 입금받은 사실, 2002. 9. 7. 원고 한기수의 이동전화요금이 선불카드 15,000원으로 수납된 사실, 원고 강영옥, 고선미, 김성래, 남기삼, 박돈

하, 이석로, 이준길, 이지형, 은형석, 정은혜, 최지호, 홍은경(이하 '원고 강영옥 등'이라 한다)은 매직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

원고 강영옥 등에 대하여는 그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 매직엔 가입이 이루어졌음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월정액 매직엔 가입 규모, 경위, 그 이후의 정황, 원고들의 월정액 매직엔 가입 및 해지, 요금환불 상황, 피고가 2001. 7.부터 월정액 매직엔 가입유치 정책을 시작하였음에도 월정액 매직엔 상품이 2001. 10.부터 급속히 증가되었고(2001. 1.부터 2001. 9.까지 분기별 가입이 감소추세였으나, 2001. 10.부터 2001. 12.까지의 매직엔60/120/240 가입건수는 직전 분기의 9배에 달한다), 원고들의 월정액 매직엔 가입은 대부분 2001. 10. 내지 2001. 11.경에 이루어진 점, 피고의 대리점은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월정액 매직엔 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킨 후 고객 모르게 다시 해지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2002. 2. 이전 및 그 이후에도 월정액 매직엔 등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에 피고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부가서비스 신청시 이용자의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이 월정액 매직엔 가입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를 피고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는 2002. 5. 이전에는 월정액 매직엔 가입에 대하여 가입 이후 가입의사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강영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스스로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평기, 한기수에 대하여 월정액 매직엔 요금 환불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환불하였음을 자인하는 원고들 가운데에도 매직엔 서비스 종료일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요금이 환불된 경우가 있는 점, 원고 김미경, 김용범은 평소 매직엔 서비스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 원고 김미경은 피고로부터 월정액 매직엔 해지 후 30분 무료통화를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미경, 김용범, 김평기, 한기수도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월정액 매직엔 가입은,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당시 제공한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대리점에 의하여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발생

(1) 우선, 피고가 직접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처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대리점들에게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시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 증인 김혜숙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대리점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대하여 이용자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월정액 매직엔에 가입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대리점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약정된 이용약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법에 규정된 무가서비스 신청 방법,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리점들을 정기적인 교육, 영업회의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영업정책을 통보하여 그에 따르도록 함은 물론 운영자금 지원, 제게조치 등을 통하여 대리점의 영업에 대한 감독도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월정액 매직엔 가입유치 정책을 통하여 대리점들에게 많은 수의 위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할 것을 독려한 점, 피고는 월정액 매직엔 가입유치를 위하여 대리점에게 강남영업센터의 사무실 및 사무집기, 가입자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피고의 대리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대리점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 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 월정액 매직엔 요금의 부당한 납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환불하고 3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의 지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신뢰성,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들만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 경위, 원고들의 월정액 매직엔 가입 기간 및 납부·환불받은 이용요금, 피고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자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사업자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고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는 점, 피고가 위 무단가입으로 형사처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월정액 매직엔 무단가입 이후에도 피고의 이용자들에게 대한 부가서비스 등 무단가입이 근절되지 아니한 점과, 한편으로 원고들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납부받은 월정액 매직엔 요금을 환불하고 30분 무료통화를 제공하고, 무단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3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2. 10.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6.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철 _____

 판사 이규호 _____

 판사 김지선 _____